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17714 |
|----------|-------|

발의연월일 : 2026. 3. 24.

발 의 자 : 이광희 · 진성준 · 박지원
윤건영 · 김성희 · 김 윤
김문수 · 임미애 · 박정현
박성준 · 김기표 · 이주희
문금주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통해 해당 가입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비자발적 소득 상실 상황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단절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음.

그러나, 업무상 재해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대상으로 처리되어 해당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업무상 재해로 휴업 중인 근로자가 오히려 근로관계가 종료된 실직자보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보호 수준이 낮아지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산업재해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단절되어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이 지연되거나 연금액이 감소하는 등

산업재해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측면에서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를 받는 기간에 대하여 일정 요건 하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 크레딧 제도를 신설하고, 해당 기간에는 휴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인정소득을 산정하여 사업장가입자로 보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보호를 강화하고 사회보험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9조의3 신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산업재해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 중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휴업급여를 받는 경우로서 휴업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이 경우 제8조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은 사업장 가입자로 보고, 해당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휴업급여의 원인이 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릴 때의 사용자는 해당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사용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따른 휴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월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④ 국민연금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접수·처리 등 업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및 그 밖의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 제4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재해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급여를 받는 자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u><신 설></u></p> | <p><u>제19조의3(산업재해에 대한 가입 기간 추가 산입) ①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 중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휴업급여를 받는 경우로서 휴업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이 경우 제8조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은 사업장 가입자로 보고, 해당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휴업급여의 원인이 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릴 때의 사용자는 해당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사용자로 본다.</u></p> <p><u>②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u></p> <p><u>③ 제1항에 따라 산입되는 가</u></p> |

입기간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따른 휴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월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④ 국민연금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접수·처리 등 업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및 그 밖의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 제4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